

##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- 424호

“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5. 24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 지원 공고

## 1 지원사항

### □ 지원개요

-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 기관이 보증을 지원

### □ 지원기관

-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(이하 “보증기관”)
  -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(확인서 발급)

### □ 지원규모 : 총 3,500억원

- 보증기관별로 각 1,750억원 지원 (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)

### □ 지원대상

- 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

○ 세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

	구분	세부 지원대상	기업 종류
①	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업용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등 에너지(전기, 열)를 공급·판매하는 기업 (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)</li> <li>▶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</li> </ul>	중소·중견 기업
②	신·재생에너지 산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(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)</li> </ul>	

주1)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” (센터 공고) [별표7]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

주2)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주3)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(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)

## □ 대상채무

	구분	내 용	지원대상
①	시설자금	▶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	발전기업
②	생산·운전자금	▶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·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	산업기업

## □ 보증금액 : 대출금액의 95% 이내

- 보증한도 :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

## □ 보증료

○ (기준요율)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

최저 보증료율	최고 보증료율
연 0.5%	연 3.0%

- (우대적용) 기준요율에서 0.2%p 차감
  - 단,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.5% 고정요율로 우대
- (수납시기)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

## □ 보증심사

-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신용도, 사업성·기술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평가
  -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반 보증지원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 가산 가능
  - 평가등급은 각 보증기관의 내규에 따르며, 보증접수 및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
  -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제한

## □ 지원 제한

- 보증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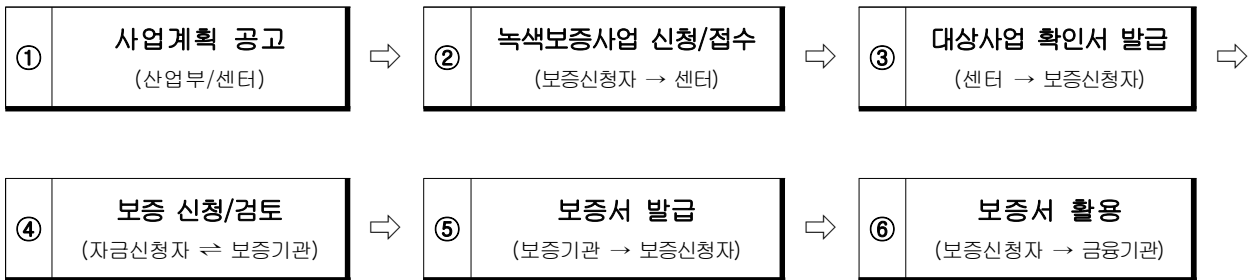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대상
보증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보증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</li> </ul>
보증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휴업중인 기업, 대출금 연체기업</li> <li>▶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</li> <li>▶ 보증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</li> </ul>

주1)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의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규정, 기술보증규정 참조

□ 신청방법 : 신재생에너지센터(이하 센터) 홈페이지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1. 5. 31(월). ~ 상시 \* 예산 소진 시 종료

□ 지원절차



【단계별 녹색보증사업 진행 세부 내용】

구분	단계별	주요내용
한국에너지 공단(센터)	녹색보증사업 신청/접수	녹색보증사업 신청/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, 보증기관에 추천
보증기관	보증 상담	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, 보증금지·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
	현장조사	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· 기술개발, 제품화, 생산능력 및 경영상태, 자금상태 등 확인
	심사·승인	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, 탄소가치(기후기술)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	보증서발급	보증약정 후 은행 등 금융기관(채권기관)에 전자보증서 발송
은행 등 금융기관	대출약정/실행	보증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/실행 취급

## 2 유의사항

-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
- 보증서 발급은 보증기관이 기술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보증심사 시 심사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증기관별로 정한 바에 따름
- 신청인은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을 미지정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
- 발급된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

## 3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”과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보증업무는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상세내용 문의
 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052-920-0783~4)
  -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(053-430-4354)
  -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(051-606-7392)

## 4 제출서류

### □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(한국에너지공단 제출)

구 분	서류 목록	비 고
공통	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	필수
	사업자등록증	
	중소(중견기업) 확인서	해당 시
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	계약서 등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 증빙 서류	필수
	발전사업허가 등 에너지 공급·판매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	
신·재생에너지 산업기업	관련 매출실적 확인서류(재무제표 등)	
	신·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등 관련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기술 보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	

### □ 보증서 발급(보증기관 제출)

구 분	서류 목록	비 고
정보제공동의서 <sup>주1)</sup>	고객정보 활용동의서	필수
기업개요 <sup>주2)</sup>	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	
사업자정보	주주명부	해당 시
부동산정보	임대차계약서	
인·허가 등	각종 인허가 및 산업재산권	

주1) 금융정보,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

주2) 보증기관별 소정 양식